

2014가합 35452 손해배상 등

문서제출명령신청

원 고 박철우 외 225

원고들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소헌

담당변호사 신인수

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외 5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귀중


www
2/13 디오스
502

문서제출명령신청

사 건 2014가합 35452 손해배상 등
원 고 박 철 우 외 225
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외 5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.

1. 문서의 표시 및 취지

가. 2014년 4월 8일 노사합의 관련 노사협의 자료 일체 

2014년 4월 8일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은 사측과 사업합리화, 특별명예 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(갑 제3 호증의 1, 2, 3 각 노사합의서),

- 위 각 노사합의서가 작성되기까지 노사 간에 작성된 의사록(대화록) 등 노사협의 관련 자료 일체

나. 사내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위원 현황,
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현황 자료

피고들은 2014년 4월 8일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/대부제도 및 본인학
자금 지원제도 폐지, 복지포인트 축소, 인재육성포인트 및 교육보조비는
아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내복지기금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서를
작성하였는 바(갑 제3호증의 3 복지제도 축소 노사합의서),

- 사내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위원 현황,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내
복지기금 재정현황 관련 자료 일체

2. 문서의 소지자

피고 케이티 노동조합

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(정자동, KT 분당사옥 6층)

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

3. 증명할 사실

원고들은 밀실에서 진행된 이 사건 노사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
고통에 대한 위자료, 강제전보/임금/복지제도 축소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관한
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. 원고들은 조합원이자 직접 피해 당사자이면서도
지금까지도 ① 이 사건 노사합의가 체결된 경위 및 근거, ② 사내복지기금 운
영현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바,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및 손해배
상내역(복지제도 축소)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.

4. 문서제출의무의 원인

위 문서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의 임금 내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'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', 제2호의 '원고들이 문서를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'에 해당하고, 동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'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'에도 해당합니다.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정한 각 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이에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344조 제2항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.

2015. 1. .

원고들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소헌

담당변호사 신 인 수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귀중